

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신보라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6381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3. 24.

발의자 : 신보라 · 이종배 · 하태경
문진국 · 김석기 · 김선동
이종명 · 박명재 · 함진규
송희경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5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·징수,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은 개별법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이 적용됨.

그럼에도 「송유관 안전관리법」에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과 중복 되거나 배치되는 과태료 징수 등 절차에 관한 규정이 남아있어 법 적용의 혼선 및 국민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음.

이에 사문화된 과태료 징수 등 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과태료 징수 및 재판절차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.

주요내용

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과 중복·배치되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 조항, 과태료 재판 관련 조항, 과태료 체납처분 관련 준용

조항을 삭제함(안 제1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).

법률 제 호

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14485호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법률 제14485호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7조(과태료) ① ~ ③ (생 략)</p> <p><u>④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이의를 제 기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⑤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자가 제4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, 그 통 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「비송 사건절차법」에 따른 과태료 재 판을 한다.</u></p> <p><u>⑥ 제4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 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.</u></p>	<p>법률 제14485호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7조(과태료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<삭 제></u></p> <p><u><삭 제></u></p> <p><u><삭 제></u></p>